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7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1년 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의 마무리를 앞두고 분배소 폐지 및 경보통제소 기능보강 등 새로운 경보운영체계 확립에 따른 민방위 경보요원의 정원을 조정 재배치하고
- 지방재정의 중복투자 방지 및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심사 업무의 전담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 : 2,410명 ⇒ 2,413명(3명 증원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00명 ⇒ 1,403명(3명 증원)
 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14명 (변동없음)
 -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 (변동없음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52명 (변동없음)

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2,410명”을 “2,413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
“1,400명”을 “1,403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2,410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400명</u></p> <p>2. 내지 4. (생략)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<u>2,413명</u></p> <p>1. : <u>1,403명</u></p> <p>2. 내지 4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○ 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- ⑤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○ 제21조 (정원의 규정)

-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 - 1. 집행기관의 정원
 - 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 -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 -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 - 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- ② - ④ (생략)